

파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

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, 파주시 보육지원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9년 1 월 11일

파 주 시 장

1. 위탁운영 대상시설

시설명	소재지	보육정원	시설규모	계약예정일	취약보육	비 고
시립 산내마을10단지 어린이집	파주시 심학산로 385 (목동동, 산내마을10단지 운정센트럴푸르지오)	96명	476.211㎡ (지상1층)	2019년 2월중	2개이상 장애통합(필수) 시간연장(필수)	신규

※ 리모델링에 따라 보육정원은 변경될 수 있음.

2. 위탁운영기간 : 5년(선정 후 계약일 결정)

3. 신청서류 접수

- 가. 공고 기간 : 2019. 1. 11.(금) ~ 2019. 2. 1.(금) (21일간)
- 나. 접수 기간 : 2019. 1. 31.(목) ~ 2. 1.(금) 09:00~18:00, 점심시간제외
- 다. 접수 장소 : 파주시청 보육청소년과 (파주시 시청로 50, 복지동 2층) ☎ 031-940-4412
- 라. 접수 방법 :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(토·일요일 및 우편접수 불가, 점심시간제외)
- 마. 제출 서류 : 위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(제출서류 목록참조)
 - 신청서 작성 시 순서에 따라 좌철 제본하여 16부(원본 1부, 사본 15부)
 -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고시 공고란에 공고문과 동시 게재

4.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

가. 【법인·단체】

-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·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등록단체
 - ※ 정관 또는 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결정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
-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 법인·단체의 경우 원장이 소속법인,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 전담할 수 있는 자

나. 【개인】

-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·수여하는 자격증(어린이집 원장)을 소지한 자
- 과주시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

5. 신청자격 제외대상

- 가.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(개인, 법인, 비영리 등록단체,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에 소속된 원장 내정자 포함)
- 나. 법령위반으로 최근 5년 이내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·단체·개인
- 다. 위탁제 명의만을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
- 라. 법인·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
- 마. 공고일 현재 국공립, 영아, 장애아전담시설 등 정부지원(인건비)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(단, 법인, 단체는 제외)
- 바.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체(자)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(접수전일까지) 및 행정처분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(과징금 포함) 및 예정인 운영체(자)
 -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(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), 제39조제2항(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)
- 사.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관련 적용대상 법령위반으로 처벌(금고, 벌금이상의 형)을 받은 자
- 아. 타인의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
- 자. 영리 및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자

6. 위탁운영 조건

가. 위탁범위 :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

나. 운영재원 :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 수입

-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(입소료 등)의 활용은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

다.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금지

라.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실시하지 못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.

마. 보육관련 법령,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안내 및 보육사업 추진계획, 파주시 보육지원조례,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치 않을시 파주시 보육지원조례 25조에 의거 위탁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음

바.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용승계 하여야 함

7.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

가. 선정방법 :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선정(심사일 별도 통지)
단, 1명이하 신청시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는 위탁신청자가 1명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해 위탁자 선정

나. 면접방법 : 신청주체(대표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10분 이내 운영 계획 설명과 질의·응답 순으로 실시(프리젠테이션 활용)

- ▶ 불참 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(포기자) 것으로 간주함.

다. 결과발표 : 시청홈페이지 게재 및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

라. 지정된 기일까지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,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 위탁운영자 선정 및 결정은 무효로 하고,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

8. 위탁자 선정기준(배점)

1차 서류심사(40점)	2차 면접심사(60점)
평가내용	평가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주체 공신력(10) ○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(20) ○ 재정능력(5) ○ 지역사회기여도(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집 운영실적(복지 및 보육 관련)(10) ○ 어린이집 운영계획(취약보육 포함)(40) ○ 어린이집 운영능력 종합평가(10)

- ☞ 위원별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 가장 높은 운영체(자)를 선정
- ☞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, 원장의 전문성,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9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,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나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(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,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)나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 및 취소 처리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 실시
- 다. 모든 확인서등 제출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함
- 라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는 위탁운영 대상시설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취약보육(시간연장·장애아·영아·다문화) 실시계획 포함
- 마.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(어린이집 사전 답사 안내 가능하며, 어린이집 기본현황 자료 요청시 제공함)
- 바.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공고 내용 <별표 1>의 목록 순서대로 제본(목차 및 페이지부여, 간지 라벨처리)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행정에 임하는 자세로 보아 배점에서 3점 감점 적용
- 사. 신청시 제출서류 중 원본서류 미제출 시 사본서류는 인정하지 않음.
- 아.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파주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연간 예산액의 15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(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증공제 포함)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.

- 자.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접수 불가 단, 불가피한 사유(사고·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)는 제외
- 차.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(원장 포함)인 경우 위탁계약 체결일 직후 그 직을 사임하고 개원준비를 하여야 함.
- 카.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유권해석 판단에 따른다
- 타. 접수기간내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로 함

10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【 문의전화 : 031) 940 ~ 4412, 4413, 4418 】